

22. 職場 및 民間保育施設設置資金 融資計劃

資料提供：建設交通部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대상아동에 비하여 부족한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94년부터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97년도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오니 회원사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보육대상아동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예정)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사업추진 계획

가. 기본방향

- 시설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설치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여 민간부문 보육여건의 향상 유도

- 시설설치자 용이하고 개원후 부담경감을 위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용자조건(이자율, 상환기간 등) 확보
- 보육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 방안 강구 및 용자규모의 적정화

나.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자계획	용 자 기 준	용자한도액
계	200,000 (1,548개소)		
○ 시설건축비	60,000 (200개소)	○ 평당 300만원 - 건축비, 시설·장비설치비, 교재·교구비 - 100평 기준 3억엔	○ 9억 원 (300 평) 이하
○ 시설설치비	100,000 (500개소)	○ 평당 200만원 - 건물매입비, 임대비, 시설· 장치설치비, 교재·교구비 - 100평 기준시 2억원	○ 6억원(300평) 이하
○ 시설기능보강 비등	40,000 (848개소)	○ 평당 100만원 - 시설개·보수비, 시설·장 비설치비, 교재·교구비 등 - 30평 기준시 3천만원	○ 6천만원(60 평) 이하

- (1) 총용자액(2,000억원)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 사업물량 및 용자액 조정가능
- (2) 시설건축비 용자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사업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 등 추가용자 가능
- (3) 시설설치비 용자시 지역여건상 건물매입비, 임대비가 등 용자기준 보다 높을 경우 실제비용을 반영하여 추가 용자 가능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응자금 집행

가. 응자 대상자(종교시설, 단체, 법인, 기업체, 개인)

(1) 시설건축비 응자

- (가)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
- (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신축건물을 매입한 자
- (다)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로서 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자

(2) 시설설치비 응자

- (가) 기존건물을 매입, 임대 또는 소유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기존건물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건물 포함)
- (나) 월세나 전세로 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자가 전세나 건물매입을 하고자 할 경우

(3) 시설 기능보강비 등 응자

- 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자로서 부족한 교재·교구(놀이시설포함)확충 및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자

(4)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정부지원 보육시설(당해년도 국고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이 증·개축, 개·보수, 교재·교구구입비 등을 신청할 경우 법인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추천

나. 응자 우선순위

- (1)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 (2) 영아, 장애아전담 및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3)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공동육아협동조합)
- (4)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5) 현재 보육시설 운영자가 건물임대, 매입, 증·개축, 시설기능보강을 하고자 할 경우
- (6) 보육종사자자격을 갖고 있는 자

다. 응자조건 및 취급 금융기관

- (1) 이자 : 연리 8%(은행취급수수료 포함)
- (2) 상환기간 : 15년 이내
 - (가) 시설건축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나) 시설설치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다) 시설기능보강비 등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3) 취급금융기관 : 평화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중 응자신청자가 선택하는 금융기관
- (4) 담보 : 취급금융기관과 대출계약시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함.

라. 신청 및 사업자 선정

(1) 신청

- (가) 신청기간 : '97. 1. 10~'97. 2. 20
- (나) 접 수 : 신청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다) 제출서류 : 신청서 3부(별표 1)

(2) 사업자선정

- (가) 시·군·구
 - 1)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 10~2. 20
 - 2)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의견서를 작성

사업자의 담보제공능력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 가) 시설의 입지여건 : 인근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과 보육수요를 감안하고 설치예정지(건축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 나) 보육과 관련된 경력 및 자격, 봉사정신 등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 ※담보설정시 담보가액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나) 보건복지부 및 시·도

- 1) 각 시·도지사는 용자신청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97. 3. 1까지(별표 2)
-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의 신청내역과 총 용자규모를 감안, 시·도에 용자사업비를 배정하고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3) 각 시·도지사는 배정된 용자금 범위내에서 용자취급기관(농협:시·도지회, 평화은행:본점)별로 용자 추천(추천서 별표 3)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별표 4)
- 4) 용자추천은 담보능력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자의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함.

마. 용자신청 및 대출금 지급

- (1) 용자취급기관은 시·도에서 용자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용자신청을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자승인을 하여야 함.
- (2) 용자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용자추천후 30일 이내에 용자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자추천이 자동 취소됨. 다만, 사업자가 미신청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가능
- (3)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자의 용자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담보내용 및 신용 등이 부실하여 용자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용자신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자를 변경하여 용자 추천할 수 있음.
- (4)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 무단지연, 적금가입권장(용자시 상환 명목으로 통장개설) 등의 민원소지 근절
- (5)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신청
 - (가) 건축비: 건축공사착공시 대출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공사대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공사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 1) 기성조서는 감리자가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용자취급기관에 제출

2) 기성금지급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선급금의 지급) 및 회계예규 제5조(선금의 정산) 규정을 적용

(나) 설치비 : 건물매입비, 임대비의 경우 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후 대출 실행

(다) 기타비용 : 기능보장비, 공사의외의 잡비 등은 자금소요계획을 제출하여 대출실행 후 사후 증빙서류를 용자취급기관에 제출

바. 사후관리 및 보고

(1) 사업추진 상황과악

(가) 사업자는 별첨서식에 따라 시설인가 또는 대출완료시까지 월별 사업추진상황을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매월 5일까지(별표 5)

(나)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표 6)

(2) 용자금의 사후관리

(가) 사업자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시설을 설치

(나) 사업자의 선정취소 및 용자금 회수

1) 용자금 또는 용자금을 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을 타 목적에 사용할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용자금 수령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사준공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4) 특별한 사유없이 시설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건물매입비의 잔금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을 인가(신고)받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용자취급기관이 위와 같은 사항을 적발한 경우 상호통보후 용자취급기관에서 회수 조치

(다) 공사연기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시·도지사는 그 타당성을 검토후 기간연장

(라) 사업자가 용자받아 설치한 시설을 타지역으로 옮길 경우 용자금을 상환하여야 함.

(마) 용자시설의 명의변경

1) 명의변경 대상자

- 가) 용자사업자가 사망, 자격상실(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파산, 이민의 경우
- 나) 용자사업자가 폐질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시·도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의 변경

2) 명의변경 절차

- 가) 사업자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유, 인수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한 신청서(별표 7)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나) 시·군·구청장은 서류검토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다) 시·도지사는 서류검토후 명의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위 1)-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라) 시·군·구청장은 사업자 및 해당 금융취급기관에 통보
- 마) 금융취급기관은 인수·인계 완료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바) 보육담당자는 시설인가대장 등에 용자받아 설치한 시설을 표시하여 시설운영의 제반 변동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용자사업자 관리카드 기재 철저)

(바) 민간용자시설의 법인전환시 업무처리

1) 용자금 상환 후 법인전환

- 2) 용자금이 법인출연 기본재산의 50% 미만인 시설로서 법인설립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자금 상환 및 보육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출연기본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유의)

(사) 시·도(시·군·구)는 연도별 용자사업자 개인별 관리카드(별표 8)를 작성하여 용자금의 상환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며, 사업자의 용자 및 운영현황(별표 9)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

4. '97년 용자자금 집행시 유의사항

'96년도 용자자금 미집행액이 '97년도에는 이월이 불가하므로

(2억원 이하 소규모 용자금은 여신관리자금계좌제도에 의거 문제가 없음)

가. 2억원이 넘는 용자금 중 '96년도에 집행되고 나머지 미집행액은 '97년도 용자자금에서 집행

나. '96년도에 추천을 받았으나 용자 실행(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 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 용자추천이 취소됨.

○ 복지부 아동 65210-2380('96. 10.24)호 공문 참고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조치사항

(1) 시·군·구청장은 용자금 미집행액을 파악하여 사업자 명단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97. 1. 15까지 보고(보고서식 1)

(2)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97. 1. 31까지 보고(보고서식 2)

[보고서식 1]

'96년도 용자자금 미집행액

시·군·구 명 :

(단위 : 백만원)

성 명	주 소	용 자 자 금			사 유
		계	집행액	미집행액	
계					

[보고서식 2]

'96년도 용자자금 미집행액

시·도 명 :

(단위 : 백만원)

시·군·구 명	건 수	용 자 자 금			비 고
		계	집행액	미집행액	
계					

※시·군·구의 사유를 요약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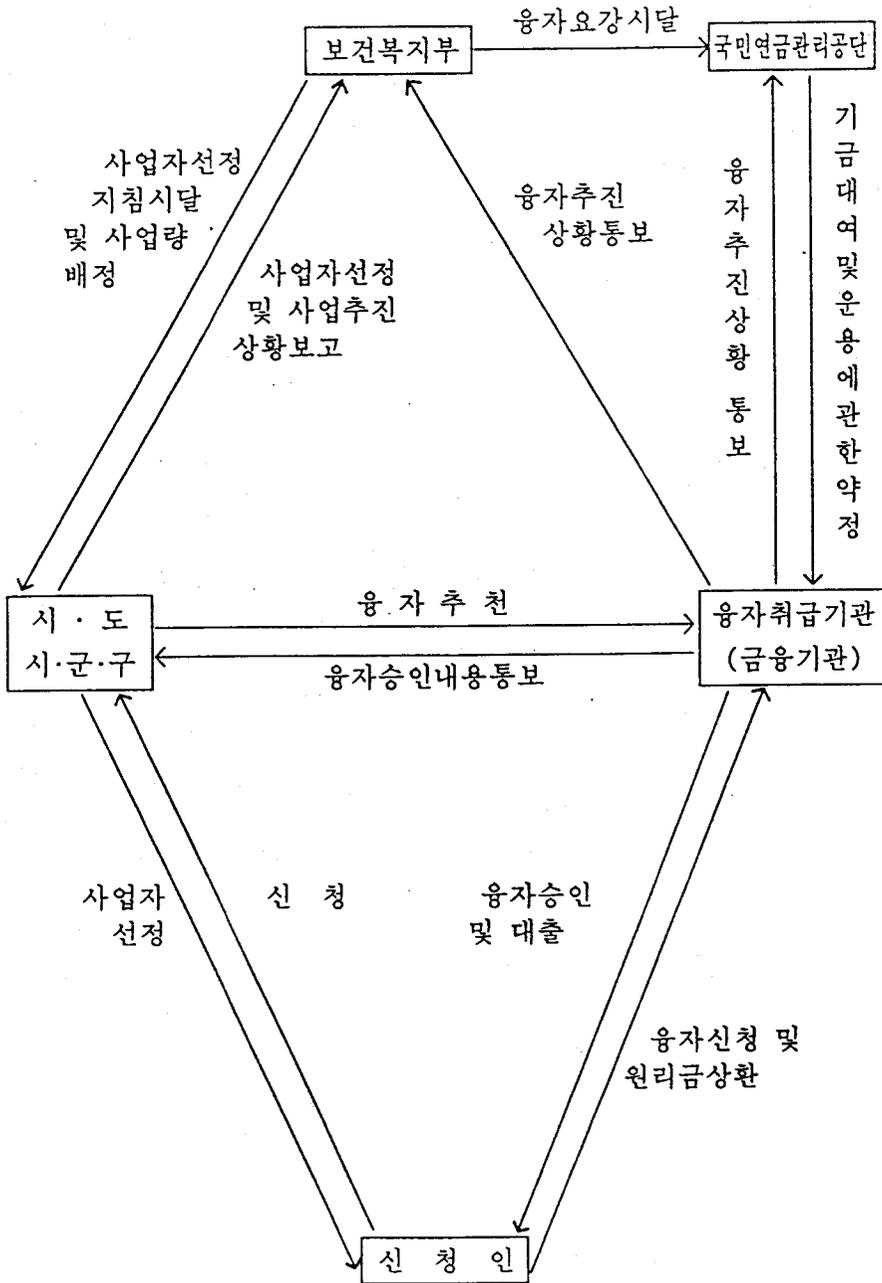
5. 응자사업자 이행 및 참고사항

- 가. 사업계획(소재지, 사업기간, 사업비, 응자희망금액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
- 나. 사업추진실적을 사업추진 완료시까지 매월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별표 5 예시).
- 다. 응자금액은 응자추천액 범위내에서 응자 가능하며, 담보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추천액 이하로 응자될 수 있음.
- 라. 사업자는 응자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자추천서를 금융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응자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응자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응자승인을 받아야 함. 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응자추천은 자동 취소됨.
- 마. 추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자금지급사유(선급금, 건축공정에 따른 지급, 장비구입 등)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취급기관에 자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금융취급기관에 문의).
- 바.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응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설치된 보육시설(일부시설 포함)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출된 응자금을 회수하며 미이행시 담보권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함.

6. 기타 사항

- 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서는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 (1) 시·도 및 시·군·구는 게시판에 응자공문 접수후 3일 이내에 공고
 - (2) 기업체, 종교계,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한 사업추진 유도 및 홍보
 - (3) 사업홍보시 사업신청자의 유의사항을 함께 홍보하여 민원편의 도모(별표 10)
- 나. 응자취급기관은 응자관련 리후렛을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배부 및 홍보
- 다. 응자금을 추천받은 사업자는 이행 및 참고사항을 준수
- 라. 통상산업부, 노동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경제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사업안내 및 대상사업장에 시설설치 권장

〈사업시행체계〉



(뒷면)

○ 사업자의 주요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학 력	년 월 일	경 력
○ 사업자의 재산(부채) 상황			
○ 담보내용			
○ 이용금융기관 ²⁾			
<p>위와 같이(직장·민간·가정) 보육시설의(시설신축·시설설치·시설기능보강) 사업비의 용자지원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건립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2부(시설건축자금 용자신청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 2부(임대, 매입, 증·개축자금 용자신청자에 한함)</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군·구청장 귀하</p>			

※ 1) 사업내용란에는 건축비, 임대비, 시설장비설치비, 놀이시설설치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분

2) 이용금융기관은 농업협동조합, 평화은행 중에서 사업자가 지정

[별표 2]

직장·민간보육시설자금 용자신청 현황

(단위: 백만원)

우선 순위	시· 군· 구	신 청 자			사업 구분	총사업비 소 요 액	용자추천금액		설치시설 구 분
		성명	직업	주 소			용자 신청	조정 금액	

※주: 1) 사업구분은 시설건축·시설설치·기능보강으로 구분 기재

2) 설치시설구분은 직장·민간·가정으로 구분 기재

[별표 3]

용 자 추 천 서

귀하

사 업 자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추 천 금 액		사 업 내 용	
사 업 소 재 지			
용 차 취 급 기 관			
용 자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율 : 8% (수수료 포함) ◦ 기 간 : 년거치 년상환 		

위와 같이 보육시설 설치자금 용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199 . . .

시 · 도지사 (인)

※주 : 이 추천서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용자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자금 자금용자 추천현황

금융기관명 :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신청 사업 구분	총사 업비	용자 신청 액	용자 추천 액	시설 설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별표 6]

'97년/분기 사업추진 상황보고

(단위 : 개소)

사업구분	계	미 착 수		진행(공사)중		완공, 설치, 기능 보강 완료	인 가	기 타
		설계중	건 축 허가중	50% 미만	50% 이상			
계								
시 설 건 축								
시 설 설 치								
기 능 보 강								

[별표 8]

년도-①-관리번호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용자사업자 관리카드

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설 개요	시설명		인가일자		
	주소	(☎)			
	보육정원		종사자수	원장 및 교사 명, 기타 명	
	대지	m ²	건물	m ² (지상 층, 지하 층)	
용자 현황	사업구분		대출기관	담당자	
	총사업비	백만원(m ²)		용자금	백만원(m ²)
	용자일시 ②				
사용내역 ③					
관리 현황	작성일자	기재사항 ④		담당자	

※①사업구분별 번호-시설건축 : 1, 시설설치 : 2, 기능보강 : 3

②분할하여 대출실행이 된 경우 실행된 일자 및 금액 기재

③시설건축, 증·개축, 매입, 임대비 : 백만원(m²)

기타 시설장비, 교재·교구비 등을 자세히 분류 기입

④사업자의 용자현황, 운영현황, 변동사항, 기타 점검사항 등을 일자별로 기재

[별표 9]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용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별	사업구분	용자추천		대출승인		대출실행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 계	계							
	시설건축							
	시설설치							
	기능보강							
시·도·명	계							
	시설건축							
	시설설치							
	기능보강							

[별표 10]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1. 보육시설의 개요

◦ 보육시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6세 미만의 영·유아나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임.

◦ 운영

- 보육시설은 시·군·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운영하여야 함.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시설기준, 종사자자격 및 기준, 운영기준, 보육내용, 보육료 등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기 바람.
- 생활보호대상아동, 모자가정, 부자가정, 기타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 가정의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 및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 응자대상자 추천

- 응자대상자는 개인, 기업체, 단체, 법인, 종교시설 등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선정시 보육사업 종사경력이 있는 자, 자기자본과 담보여력이 충분한 자 등 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추천

3. 시설의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 기존건물에 300㎡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은 필요치 않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를 하여야 하는 등 타법령에 의한 설치제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또는 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함.

4. 용자실시

○ 담보제공

- 용자재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서 부실채권 발생시 용자취급기관(농협, 평화은행)에서 변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는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건물에 대한 설정금액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용자취급기관과 미리 상담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담보물건 중 교회, 사찰, 육아시설, 양로원, 종중재산 등은 담보제공이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제한됨.
- 전세권도 등기후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금융취급기관에서 특별히 신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액대출시 신용대출도 가능함.
- 사업자가 금융취급기관과 용자상담결과 담보제공 및 신용 등에 문제가 있어 용자추천액 이하로 대출되거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대출실행절차

- ① 용자추천(관할 시·도지사 → 사업자, 용자취급기관)
- ② 용자상담 및 대출신청(사업자 ↔ 용자취급기관(지점))
- ③ 담보제공 및 대출승인(사업자 ↔ 용자취급기관(지점))
- ④ 용자자금을 사업자별 관리자금 계좌로 입금(용자취급기관)
- ⑤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실행

- 건축비 : 대출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공사대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공사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기성조서는 감리자가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용자취급기관에 제출

- 설 치 비 : 건물매입비, 임대비의 경우 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후 대출 실행
- 기타비용 : 기능보강비, 공사외의 잡비 등은 자금소요계획을 제출하여 대출실행
후 사후 증빙서류를 용자취급기관에 제출

5. 기타사항

- 대출신청후 인가시까지 매월 사업추진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용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자받아 건립된 시설을 타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용자금 회수조치

주택회보